

【교 훈】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화목하게 지내자	 가정통신문	제 2023 - 101호 동 남 중 학 교	
		시행부서	교육연구부

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운영 계획

학교의 발전과 학생 교육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운영 계획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라며,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
I 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의 지필평가 응시

- **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**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를 권고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함.
 - * 유증상 학생
 - :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
 - :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,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**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**은 분리고사실에서 지필평가에 응시하며, 마스크 착용(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), 타인과 접촉 최소화, 손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.
- **코로나19 확진·유증상**으로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하고자하는 학생은 **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(학교 홈페이지 '학생마당-각종 양식'메뉴에 탑재)**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함.

II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결시 학생의 성적 처리

- **코로나19 감염**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(인정비율 100%)을 부여함.
- **증빙서류**: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(PCR 결과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)
- **분리고사실 응시생**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.

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

-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
-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
- **분리고사실 응시생**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

- ①고사기간 전에 확진·유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, ②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**인정 비율 100%** 부여
- 비교육적 행태 예방 및 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(응시→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**인정 비율 80%** 부여

Ⅲ

확진·유증상 학생의 지필평가 응시 유의사항

- 등·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되, 이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보호자 차량, 도보 등을 선택하여 등교합니다.
- 자가격리 장소(집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또는 이와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.
- 공용 식수대를 이용할 수 없으니 개인 음용수를 준비해주세요.
- 이동 중 식당, 편의점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등교합니다.
- 화장실은 학교 안내 사항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또는 지정칸을 이용해주세요.
- 등교 및 분리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- 분리고사실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자가격리 장소(가정)로 돌아갑니다.

*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2023. 6. 19.

동 남 중 학 교

